

# '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

◇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 주기 변경\*, 보수교육기관 추가지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2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계획 안내  
 \* 2년→3년('24.1.1.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추가지정('23.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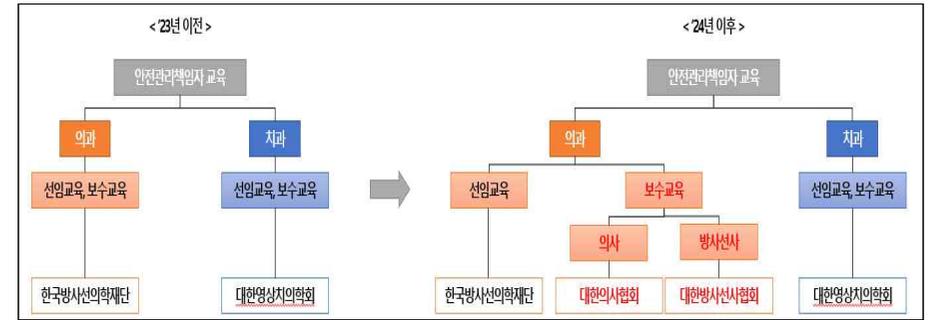
- **(교육근거)**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제2조
- **(교육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  
 \* 「의료법」 제37조제2항
- **(교육구분)** 교육시기에 따라 **선임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교육**
  - **(보수교육)** 선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매 3년)으로 받는 교육**
- **(교육시기)** 선임일(선임교육), 최근 교육이수일(보수교육) 기준으로 산정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 예시) 선임일이 '24.1.5.인 경우 '25.1.4.까지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예시)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의 이수일이 '24.1.5.인 경우 '27.1.1.부터 '27.12.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참고> 연도별 보수교육 대상

보수교육 연도	보수교육 대상
'23년	'95 ~ '21년도 선임교육 이수자
'24년	'23년도 보수교육 대상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25년	'22년도 선임교육 이수자
'26년	'23년도 선임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27년	'24년도 선임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 보수교육은 '23년 첫 시행, 변경된 보수교육 주기(매 3년)는 '24년부터 적용

- **(교육기관)** 의과/치과, 선임/보수교육 구분에 따라 **총 4개 기관**에서 운영
  - **(의과) 선임교육:**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보수교육:**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 \* 의과 분야의 보수교육을 면허 종별로 세분하여 의사, 방사선사 보수교육 기관 추가지정('23.11.27.)
  - **(치과) 선임 및 보수교육:** 대한영상치의학회



- **(교육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사전녹화 동영상 교육  
 \* 교육기관에서 향후 사전녹화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 예정
  - **(선임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또는 화상서비스), 월 1회 이상 운영  
 ※ 의과(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 경우 '25년도부터 이러닝 교육으로 전환 예정
  - **(보수교육)** 사전녹화 동영상 교육, 상시 운영
- **(교육내용)** 의과/치과, 선임/보수교육에 따라 교육내용 일부를 달리 운영<참고>
- **(수강절차)** 각 교육기관 안내문 참고

## 참고1 교육기관별 교육계획 등

###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등

구분	의과			치과
	선임	보수		선임·보수
교육기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기관 지정일	'21.7.23.	'23.11.27.	'23.11.27.	'22.12.20.
교육대상	의사, 방사선사	의사	방사선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교육방식	실시간 온라인	사전녹화 동영상	사전녹화 동영상	(선임) 실시간 온라인 (보수) 사전녹화 동영상
교육 시작일	'24.1.28.	'24.5.28. (변동 가능)	'24.4.8. (변동 가능)	(선임) '24.1.28. (보수) '24.3.8.
직종별 면허교육 평점인정여부 * 직종별 협회의 정책에 따라 상이	(의사) 3평점 인정 (방사선사) 2평점 인정	(의사) 2평점 인정	(방사선사) 2평점 인정	(치과의사) -(선임) 미인정 -(보수) 2평점 인정 (치과위생사) 모두 미인정
누리집 주소	www.rs20.or.kr	http://edu.kma.org	http://edu.krta.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문의 연락처	02-576-8458	02-6350-6536	02-576-6524	02-6328-0303

### □ 교육기관별 교육내용(시간표)

#### ○ (의과)

교육기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교육구분	선임교육	
면허종별	의사	방사선사
1교시	안전관리책임자가 알아야 할 것	안전관리책임자가 알아야 할 것
2교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 해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 해설
3교시	영상의학 검사의 정당화 확보와 최적화 방안	영상의학 검사의 정당화와 최적화
4교시	영상의학 검사의 환자 선량 저감화 방법과 화질 관리	영상의학 검사에서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 방법
5교시	영상의학 검사에서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 관리

교육기관	대한의사협회
교육구분	보수교육
1교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2교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 관리
3교시	의사가 알아야 할 진단용 방사선 장비 관리
4교시	환자 선량 관리

교육기관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구분	보수교육
1교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2교시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민원, 선량 초과자 사례)
3교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 저감화와 안전관리
4교시	환자 선량 저감화

#### ○ (치과)

교육기관	대한영상치의학회	
	선임교육	보수교육
1교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2교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관계 법령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3교시	영상 치의학 검사의 정당성 확보	영상 치의학 검사의 정당성
4교시	영상 치의학 검사의 최적화 방안	영상 치의학 검사의 선량 저감화
5교시	영상 치의학 검사의 화질 관리	

## &lt;관계법령&gt;

##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① 「의료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교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